

구미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3. 9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폐지사유

-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견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9.1.22 설치한 구미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구미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(제0321호 1998.11.13)를 폐지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구미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

3. 참고자료

-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의원회규정 폐지령(대통령령 제18003호 2003.6.23)
- 제2의견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 폐지령(국무총리훈령 제441호 2003.6.23)

구미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구미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